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문승욱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부처를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부·처·청 확대를 위해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확대(안 제2조)

- 1) 국가표준심의회 위원으로 규정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·차관급 공무원을 현행 16개 부·처·청에서 농촌진흥청, 특허청,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을 신규로 포함하여 20개 부·처·청으로 확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2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의2. 농촌진흥청장

14. 특허청장

15. 질병관리청장

16. 기상청장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) 「국가표준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.	제2조(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2.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2의2. 농촌진흥청장</u>
13. (생략)	1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4. 특허청장</u>
<u><신 설></u>	<u>15. 질병관리청장</u>
<u><신 설></u>	<u>16. 기상청장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	
연 락 처	(043) 870 - 5347